

2025년 경희한방요양원 입소이용 및 계약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 된 정원으로 한다. 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지침이 변경될 수 있다.
- ②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 ③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직원홍보 등을 이용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제3조(계약목적 및 기간)

- ①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 내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시행할 수 있고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계약변경 및 해제)

계약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확인 되었을 때

제5조(장기요양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③ 비급여인 식사재료비에 대한 비용은 시설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 ④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

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8~12% 부담
	일반수급자	20%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2025년 경희한방요양원 시설 이용료					
본인부담금 (30일기준) (단위:원)					
본인 부담율	구분	1등급 (90,450원)	2등급 (83,910원)	3,4,5등급(79,240원)	1일 식대 6,000원 (2,000원*3식) 간식비 무료
20%	본인부담금	542,700	503,460	475,440	
	식대	180,000	180,000	180,000	
	계	722,700	683,460	655,440	
12%	본인부담금	325,620	302,076	285,264	
	식대	180,000	180,000	180,000	
	계	505,620	482,076	465,264	
8%	본인부담금	217,080	201,384	190,176	
	식대	180,000	180,000	180,000	
	계	397,080	381,384	370,176	

■ 기관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비급여항목	금액(원)	내용	산출근거	비고	등록일
식재료비	6,000		2,000*3식		2025.1.2
간식비	0				
상급침실	0				
이미용비	0				
* 병원비,약제비등 의료비관련비용은 별도부담 *등급외자 1일 30,000(식비별도)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해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또는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8조 (특별보호 서비스기준과 비용)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 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눈다.

-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2.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3. 집중관찰·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요양실 등 특별요양침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4. 호스피스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격리 등의 집중요양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은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입소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진단 및 구충제 복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왕진이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5.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6.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2주일에 1회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8.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또는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9.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 서비스경비(교통비, 간병비 등)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 한다.
-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간호사가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수 귀원한다.

제10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등이 수급자에 의해 파손된 경우 보호자와의 합의하에 처리하도록 한다.

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책임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시설 내에서 자연사망 하였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은 요양보호대상자 및 보호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시설의 책임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에는 책임이 면책된다.
4. 영업배상보험에 가입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

제12조(퇴소 및 전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이 퇴소 및 전원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퇴소를 요구할 때
2. 수용기간 중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관계시설과 협의한다.
3. 다른 입소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자
4. 입소당시의 사유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제13조(건강진단)

입소자가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종사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규정의 규정에 의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4조(위생관리)

1.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2.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생석회 크레졸 등으로 소독한다.
3.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안전을 기한다.
4.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5. 어르신 방내에서는 식사제공을 지양하며 일정장소에서 동시에 식사를 하며 메뉴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6. 입소자의 건강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지도)

1.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입소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2. 시설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6조(입소자 사망 및 유류금품 처리)

입소자 사망 및 유류금품 처리는 관계 법규와 아래와 같은 시설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화장이나 매장 .장례절차에 대한 의견은 입소 어르신 의견이 보호자나 원장의 의견에 우선 한다
2.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3. 유류금품 처리는 입소자의 유언에 따른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자가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을 때는 연고자의 의사에 따른다.
5. 3.4호가 불가능한 경우의 금품은 접수입으로, 물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